

「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1월 1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6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0년 11월 2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산림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적극 감면
- 보훈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해 우리군 효석문학의숲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규정에 대한 정비를 추진
- 국가보훈처 등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과제 선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이행

나. 주요내용

조례 제8조(입장료 감면) 조항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○ 본 조례안은

「국가보훈기본법」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기존 조례 제8조(입장료 감면) 조항을 정비하는 목적이며

○ 조례안 주요내용은

“효석문학의 숲” 입장료 감면에 있어
평창군민, 군인, 단체객의 입장료 요금 50% 할인은 그대로 유지하고
기존 입장료 전액 감면 대상자에
숲사랑지도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의상자, 수급자 등을
추가하는 내용입니다.

○ 조례안은

「국가보훈기본법」 상 보상과 예우 실시의 지자체 의무를 반영하는 등
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부결(입장료 감면 기준에 보완 필요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입장료 감면) 효석문학의 숲의 입장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1
의2와 같다.

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입장료 감면) ① <u>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장료를 50%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</u> 2. <u>제3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단체 및 군인</u> <p>② <u>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장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</u> 2. <u>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</u> 3. <u>단순통행자 및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</u> 4. <u>만6세 이하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만65세 이상의 노인</u> 5. <u>장애인 및 국가유공자</u> 6. <u>효석문학의 숲 내에 있는 충주집을 이용하는 사람</u> 7. <u>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 	<p>제8조(입장료 감면) <u>효석문학의 숲의 입장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1의2와 같다.</u></p> <p>② <삭 제></p>

[별표1의2]

입장료의 감면기준

구분	감면대상	감면요율	비 고
입장료	평창군민	요금의 50% 할인	※ 평창군민 - 평창군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※ 다자녀가정 -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
	군인, 단체객	요금의 50% 할인	
	그린카드 소지한 사람	요금의 100% 할인	
	만6세 이하나 만65세 이상인 사람, 다자녀가정	요금의 100% 할인	
	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, 국민 및 수행원, 외교사절단 등,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	요금의 100% 할인	
	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	요금의 100% 할인	
	「산림보호법」에 따른 위촉된 숲사랑지도원	요금의 100% 할인	
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	요금의 100% 할인	
	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	요금의 100% 할인	
	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	요금의 100% 할인	
	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	요금의 100% 할인	
	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	요금의 100% 할인	
	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	요금의 100% 할인	
	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	요금의 100% 할인	
	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포로 가족	요금의 100% 할인	
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요금의 100% 할인	
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	요금의 100% 할인	
	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선거인 중 투표참여확인증 소지자	요금의 100% 할인	
	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의7 2항에 해당하는 자	요금의 100% 할인	
기타 위와 유사한 사람으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 또는 평창군수가 인정하는 사람	요금의 100% 할인		

비고

1. 입장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2. 감면을 적용은 기간에 관계없이 [별표1]의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